

Legal Update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By Young-Han LEE, Jin-Wook Noh, Dentons Lee

I. 서론

2018년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용어의 부정확성과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근거로 특별법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금지와 거래소 폐쇄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2년이 훌쩍 지난 2020년 11월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국 거래소에서 버젓이 2천만원을 돌파하며 자신의 몸값을 자랑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과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금의 대체투자수단이 될 것이다”고 예상하며 “2023년까지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2억이 넘을 수 있다”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손쉽게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일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노다지’가 있다. ‘노다지’의 어원 중 하나는 조선의 인부들이 금광석을 만지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면 만지지 말라는 의미로 “No touch! (노 터치)”라는 뜻에서 와전되었다고 한다. 2018년 가상화폐 시장은 끝이 날 것이라는 일부 사람들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상화폐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몸집을 키워 가고 있고,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한 암호화폐 생태계가 미래 먹거리 또는 ‘노다지’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증가하는 시장거래 속에 우리 정부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규제를 계획하고, 또 그것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본 기고문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및 관련 투자자들이 알고 이해하면 도움이 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와 관련 이슈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와 G20 등은 2019. 6. 21.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공개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FATF는 국제기준에 따른 해당 권고안을 각 회원국에게 제시했고, 회원국에게 해당 권고안에 따른 국제 기준의 이행 및 준수를 촉구했다. 2009년부터 FATF의 회원국이 된 한국도 FATF가 2019. 6. 21. 권고지침으로 제시한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관한 위험기반접근법을 위한 지침)’(이하 ‘FATF 권고지침’) 공개성명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과 시행이 필요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FATF의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019. 11. 21.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른 입법예고는 2020. 11. 3. 부터 동년 12. 14. 까지이며, 특금법은 2021. 3. 25.부터 본격 시행 된다. 일각에서는 특금법의 시행 이후 관련블록체인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활성화될것이란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드디어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고 보는 긍정적인 반응과, 규제준수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으로 인해 생기는 부담이 관련 산업진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으로 나뉜다.

A. 주요 골자

특금법은 FATF 권고지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금지 의무를 기존의 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에만 부여되었던 것과 달리,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i)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ii)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iii)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시, 해당 금융회사의 의무 등이 있다.

1.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우선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먼저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통화 등을 모두 가상자산으로 용어통일 했으며,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전자적 증표,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및 관리, 중개, 알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했다. 다만 지갑 사업자 중 개인키 통제권이 있는 사업자로 제한한 FATF의 권고지침과 달리, 특금법에서는 지갑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정해 놓지 않고 있어 지갑사업자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

2.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이번 특금법 시행령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지는데, 크게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 자료 보관 등이 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고 이에 따른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상자산 전신 송금 방법으로 국내 500만원/국외 USD5,000 이상 송금 시, 가상자산 사업자는 송금인 및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 받는 금융회사 등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액 현금거래에 관한 보고에 있어서는,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거래가 있을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의무를 가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지는 추가적인 의무에 있어서는, 자금세탁 위험 분석 평가와 관련해 앞서 언급한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해 관리하는 등의 의무를 가진다.

3.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시,

해당금융회사의 의무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 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主意)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시, 해당 금융회사는 고객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기본 신원에 관한 사항과 거래목적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해당 금융회사는 앞서 언급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예치금의 분리보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앞서 언급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금법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할 의무가 있다.

B. 관련 이슈

1. ISMS 인증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라는 정보보호관리인증을 받아야 한다. ISMS 인증이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관리체계가 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심사기관에서 판단 및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인증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포함 대략 13~14개월로 볼 수 있으며,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인증 비용은 대략 1~2억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1 이하 본 기사에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통화 등을 특금법 용어통일에 따라 ‘가상자산’이라 칭한다.

2 본 기고문의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관한 금액적 범위에 있어서는 2021. 05. 20.에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 내용을 참고했다.

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i)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 그리고 (ii)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수리 완료.

No.	ISMS 인증 심사 절차	예상 소요 기간
1	컨설팅 업체와 필요한 작업 논의 및 ISMS 구축·운영 준비	사전준비 (6~7개월)
2	컨설팅 내용 보완 조치	
3	컨설팅 업체와 ISMS 관련 페이퍼 작업 및 보안 검토 진행	심사준비 (2개월)
4	ISMS 심사 신청 접수 완료	
5	ISMS 예비 심사 개시 및 진행	
6	ISMS 본심사 개시 및 진행	인증심사 (3개월)
7	ISMS 심사 보완조치 수급 및 보완 개시, 진행	
8	ISMS 심사 보완조치 완료	인증 (2개월)
9	ISMS 심사 보완조치 결과 검토 완료	
10	KISA 에서 ISMS 인증서 발행 완료	

2. 실명확인 계정 서비스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시, 해당 금융회사는 고객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기본 신원을 파악할 의무를 가지고, 더 나아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 및 예치금 분리보관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특금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중은행의 실명확인계정 확보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평가한 뒤 실명확인계정을 발급하도록 하는 이 조항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해당 은행의 심사까지 받도록 하는 이중규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특금법은 금융기관의 실명확인계정 발급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소송 등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계좌발급을 결정하게 되면 특금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요건인 계좌발급 결정권을 은행이 쥐게 될 것이다. 은행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운영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은행의 평가 기준에 대한 분쟁발생 소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행의 평가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에게 영업 비밀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잠재적 경쟁사인 은행에게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는 입장이다.⁴ 은행의 실사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침해될 수 있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조건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은행에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금융권도 이러한 평가기준의 부재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이다.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의무를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은행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점에, FIU는 은행마다 내부정책이나 평가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권이 서로 만나, 통일화된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라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도 법률적 구속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포함된 법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금융권의 가상자산 사업확장 추세: (i) NH농협은행 -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통한 디지털 사업 확장; (ii) KB국민은행 - 해시드, 해치랩스, 한국디지털에셋과 가상자산 기술 협력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에 사업 확장 계획 발표; (iii)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 진출 계획

실명확인계정 발급 절차

· 실명확인계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조건부 협약서/MOU 등 체결

· 실명확인계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서비스 약정서 체결

· 실명확인계정 서비스 제공 개시

3. 트래블 룰

미국 은행비밀법 (Bank Secrecy Act) 규칙 [31 CFR 103.33 (g)] - 통상적으로 트래블 룰 (Travel Rule) 이라 불린다 - 조항에 따르면, 모든 금융기관은 한곳 이상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특정 자금전송 시 해당 금융기관은 자금을 전달받는 다음 금융기관으로 특정 정보를 전달하도록 요구한다. FATF 권고지침에도 이와 관련한 트래블 룰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권고지침에 따르면 U\$ 1000 이상의 거래 시 송신을 맡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송/수신인의 정보를 기록 및 보관 후 수취업체에 송/수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항 (제5조의3)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이전할 경우, 송신을 맡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송/수신인의 정보를 수취 업체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감독당국이 요청할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트래블 룰에 따른 규제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탈중앙화 시스템적 구조를 가지는 블록체인 특성상 송/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의 입장에서: (i) 통합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송/수신인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ii) 그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리스크가 작용한다면, 이러한 트래블 룰 규제가 거래소 운영의 핵심조건인 은행의 실명확인계정 발급 결정에 있어 금융기관의 소극적 태도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트래블 룰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이나, FIU에서는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 하다 라는 근거로 트래블 룰 법 적용 시점을 이번 시행일이 아닌 2022년 3월 25일로 정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는 트래블 룰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서둘러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기술기업들은 고객정보 및 정보 주체를 암호화하고 필요시에만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탈중앙화 인증수단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III. 방향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이번 특금법은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스타트업 및 중소형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그리 달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이다.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2개월이 넘는 시간적 비용과 1~2억원 정도의 경제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스타트업 및 중소형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시간적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향후 예상되는 트래블 룰 규제에 대한 시스템적 구축도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한 솔루션 도입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스타트업 및 중소형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큰 난관이 될 것이다.

대형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이미 관련 기술업체와 협약을 맺어 향후 있을 트래블 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규모나 업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인 규제가 생길 경우 많은 스타트업 및 중소형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사업을 정리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명확인계정 발급에 있어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사업을 더 이상 운영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 운영에 있어 중대한 결정권을 은행이 가지게 됨으로써, 은행의 실사 과정에서 발생할 영업비밀침해의 위험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으로는 대형 사업자들이 더욱 더 대형화되는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대형 가상자산 사업자 몇 군데를 제외한 중소형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IV. 결론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관련 된 범죄발생 위험 역시 증가했다. 이에 따라 FATF는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해 국제 기준을 제정했고, 해당 권고안을 각 회원국에게 제시했다. FATF 회원국인 한국 도 해당 권고안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관련 법 제 정 및 시행이 요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특 금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2020년 3월 본격 시행될 특금 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 상자산 사업자는 해당 법에 따라 ISMS 정보보호관리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확 인 및 관련 자료 보관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지 는데, 이에 따라 향후 예견되는 트래블 룰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 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 급받아야 하는데, 발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기관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될 예상이다.

가상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계획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던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이번 특금법은 반 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스타트 업 및 중소형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는 특금법이 규정한 의무 를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는 특금법에 따른 강제적 규제로 인 해 사업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금법을 통해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완벽한 규제 를 확립할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 및 가 상자산 사업자가 계속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을 넣는 이 상, 더욱 더 명확한 규제에 대한 필요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 서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사업이 투자자 및 가상자산 사업자 에게 금이 솟아나는 ‘노다지’가 될 것 인지, 아니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No touch! (노터치)’가 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가상자산의 미래 시장이 말해 줄 것이다.

DENTONS

LEE

14F, Poongsan Bldg., 23 Chungjeong-ro Seodaemun-gu, Seoul 03737, Korea
T: +82-2-2262-6000 E-mail: info.korea@dentons.com <https://www.dentonslee.com>

© 2020 Dentons. Dentons is a global legal practice providing client services worldwide through its member firms and affiliates. This publication is not designed to provide legal or other advice and you should not take, or refrain from taking, action based on its content. Please see [dentons.com](https://www.dentons.com) for Legal Notices.

CSBrand-44500-Korean-Legal-Update-Flyer-01 – 10/12/2020